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6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A, B, C, D

2. 조치내용

□ (수사기관 통보) A, B, C, D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
○ A는 E의 대리인이자 내부자로서 E 등이 ㈜OOOOO 주식을 대량취득하려는 과정에서 본 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하였으며, B 및 C에게 이를 전달하여 OOOOO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
○ D은 E 등 불특정내부자로부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,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3항, 제 448조, (舊)제443조 제1항